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제2차 및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고시되고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하여, 남부내륙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지방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조하고 공동 노력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의 명칭(안 제2조)

○ 「남부내륙철도추진 道·市·郡 행정협의회」

나. 협의회의 구성(안 제3조) : 2개도 9개시군

○ 경상북도, 김천시, 성주군, 고령군

○ 경상남도, 합천군, 의령군, 진주시, 고성군, 통영시, 거제시

다. 주요 처리사무(안 제5조)

○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협의

○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회나 중앙부처 방문·건의나 대외적인 홍보 등 사업전반에 필요한 사항 등

라. 협의회 구성 및 회장(안 제6조, 제7조)

○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분과(총무, 대외협력, 홍보) 10명으로 구성

○ 회장은 노선 통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순서대로 역임

○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총회의결을 거쳐 1년 연장 가능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추진현황

○ 2016. 3. 11 : 행정협의회 구성 합의(기재부2차관 면담시)

○ 2016. 3. 30 :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(해당 시군 담당과장)

다.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도 : 붙임

5. 검토의견

○ 본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제정안은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 착수를 위하여 노선이 통과하는 2개 광역 및 9개 시·군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조·공동 노력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
○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협의회 운영의 행·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관련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와 공조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본 제정안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